|  |  |  |
| --- | --- | --- |
| **기업소득세 관련 2부 규범성 문건 개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88호  <일부 행정 심사비준 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50호) 및 인정과세 기업도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적용기업에 포함되는 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의 일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 관련 규범성 문건 개정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을 전액 중앙에 상납하는 기업 분지기구 명단 관리문제  <국가세무총국의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등 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10]184호) 제2조와 제3조를 폐지한다. 수입을 전액 중앙에 상납하는 기업의 산하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에 자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명단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3가지 기업소득세 사항 심사비준 취소 후의 후속 관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인정과세를 적용하는 소형 박리기업의 혜택 적용문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징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77호) 제1조 (1)항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1가지 또는 몇가지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수입면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 제28조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박리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수정한다.  3. 시행일자  이 공고 제1조는 관련되는 사항에 따라 각각 국가세무총국 2011년 제25호 공고와 국가세무총국 2015년 제6호 공고의 시행일자에 따라 집행하며, 제2조는 2016년도 및 그 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29일 |  | **关于修订企业所得税2个规范性文件**  **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88号  　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4〕50号）以及税务总局关于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企业包括核定征收企业的相关规定，为做好政策衔接工作，现对企业所得税有关规范性文件修订问题公告如下：  　　一、关于收入全额归属中央的企业分支机构名单管理问题  　　《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等企业企业所得税有关征管问题的通知》（国税函〔2010〕184号）第二、三条废止。收入全额归属中央的企业所属二级及二级以下分支机构，发生资产损失的，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资产损失所得税税前扣除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5号）的规定办理；发生名单变化的，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3项企业所得税事项取消审批后加强后续管理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号）第二条的规定办理。  　　二、关于核定征收的小型微利企业享受优惠问题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核定征收若干问题的通知》（国税函〔2009〕377号）第一条第（一）项修订为：享受《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国务院规定的一项或几项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企业（不包括仅享受《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规定免税收入优惠政策的企业、第二十八条规定的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  　　三、施行时间  本公告第一条根据涉及的事项分别按照国家税务总局2011年第25号公告和国家税务总局2015年第6号公告施行时间执行；第二条适用于2016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12月29日 |